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7일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강희천

### 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교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상  
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서교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(월드컵북로 15 → 동교로15길 7)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 제1조(목적) 중 「지방자치법」  
제4조제5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으로 개정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**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교동주민센터가 2013.12.31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 센터의 소재지를 “월드컵북로 15”에서 “동교로15길 7”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」 제1조(목적) 중 「지방 자치법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제5항을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로 근거조항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 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### 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 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### **8. 기타사항 : 없음**